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9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868”을 “869”로 하고, 일반직 계 “858”을 “8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27”을 “828”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3)을 삭제하고 같은 호 4)부터 11)까지를 각각 3)부터 10)까지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존속기한: 2024년 2월 29일)

총계	17
일반직 계	17
3급 또는 4급 이하	17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3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둔다.	제44조의3(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① ----- ----- ----- <u>2024년 2월 29일</u>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한시정원) ① <u>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45조(한시정원) <삭 제>
② 삭 제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68</u>	<u>869</u>	+1
·	·	·	
·	·	·	
일반직 계	<u>858</u>	<u>859</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27</u>	<u>82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